

2009년 07월 27일 제 정  
2012년 10월 05일 1차개정  
2015년 01월 08일 2차개정  
2017년 01월 25일 3차개정  
2018년 11월 15일 4차개정  
2019년 10월 23일 5차개정  
2021년 03월 11일 6차개정  
2021년 06월 28일 7차개정  
2022년 03월 04일 8차개정  
2024년 01월 24일 9차개정

# 이사회 규정

2024. 01. 24.



# 이사회 규정

## 제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에스케이디앤디주식회사 정관 제47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 제 3 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 제2장 구성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 5 조 (의장)

- ① 이사회 의장에 관하여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의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회의  
를 주재한다.

## 제3장 회의

### 제 6 조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개최하기로 하되, 이사회 소집권자가 사전 통지를 통하여 해당 월의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제 7 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정관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 ② 각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8 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③ 이사회회의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대한 이사들의 참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제 9 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회회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나,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10 조 (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법령 또는 정관이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거나 주주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

고,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부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1. 회사 일반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 (3) 영업보고서의 승인
- (4)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5) 정관의 변경
- (6) 자본의 감소
- (7) 회사의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 또는 워크아웃 등의 신청, 착수, 회사의 계속
- (8)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1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13) 배당에 관한 사항
-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방법 결정
- (15) 이사의 보수
-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 (17)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종류의 변경 기타 주식의 권리 변경
- (18)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
- (19)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이사 해임안의 제출
- (4) 공동대표의 결정
-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6)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단, 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8) 이사에 대한 전문가 조력의 결정
- (9)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10)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11)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12)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특수관계인 간 거래 승인
- (14) 신규 사업 진출
- (15) 자회사의 설립, 인수, 출자 또는 매각. 단, 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는 제외함

### 3. 채무에 관한 사항

-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유형자산(임대목적부동산 포함)의 취득 또는 처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 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통한 취득·처분을 포함한다]
- (2)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의 100분의 5 이상의 다른 법인의 주식 및 출자증권과 주권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
-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하는 경우
-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단, 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
- (5)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거나 채무를 면제 받기로 하는 경우
- (6) 결손의 처분
- (7) 신주의 발행
- (8)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9) 준비금의 자본전입
- (10) 전환사채의 발행
- (1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2) (10)목, (11)목 이외에 기타 주식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증권의 발행
- (13) 주식, 사채 또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권리의 부여, 조건의 변경 또는 수정

- (14)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 (15)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 (16)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17) 자기주식의 소각
- (18)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의 단기차입금 증가.  
(단기차입금에는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내의 사채금액이 포함되며,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
- (19)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 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단, 종업원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에는 제외
- (20) 자본의 증감 기타 일체의 자본구조의 개편
- (21) 본호 각목에서 정한 이사회 부의기준이 법령에서 정한 이사회 부의기준에 미달 또는 불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회사의 재무 활동 사항

####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3) 타회사의 임원 겸임(단,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경우에 한함)
- (4) 이사회 규정, 회의체규정 기타 회사의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5. 기 타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3) 외부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
-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③ 권한의 위임

제10조 제1항 제1호 15목에 의한 이사의 보수를 포함한 임원의 보수(단, 사내이사의 보수는 제외)는 임원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며, 대표이사가 결정한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의

제한다.

#### 제 11 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 12 조 (삭제)

#### 제 13 조 (관계인의 의견출석)

-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이사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 14 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 15 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 16 조 (간사)**

-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업무분장규정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하는 단위조직의 조직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2009.07.01)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0.05)

이 규정은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1.0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2015년 0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1.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2017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1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3.1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202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항 본문, 동조 제1항 제1호 10목과 15목 및 제2호 6목 및 7목,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11조 3항, 제12조, 제15조 제2항은 제1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 안건 및 감사위원 선임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시행한다.

부 칙 (2022.03.04.)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1.24.)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2024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